

 금융위원회	<h1 style="margin: 0;">보도자료</h1>			• 생산적 금융 • 신뢰받는 금융 • 포용적 금융
	보도	배포 후 즉시	배포	2019.1.31.(목)
책임자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손성은(02-2100-1730)	담당자	김지웅 사무관 (02-2100-1725)	

**제 목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
 - 동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은 우리나라에 대한 FATF (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용어①}에 대비 (19.1월부터 실시 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용어②} 및 해외 주요국 수준에 부합하는 제도정비를 위한 것임

1 추진 배경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해 금융회사등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고, 과태료의 상한이 상향되는 등 특금법이 개정* (19.1.15 공포, 7.1 시행)됨에 따라,
 - 개정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 동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은 FATF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평가에 대비 (19.7월 현장실사 예정)하기 위하여 국제기준 및 해외 주요국 수준에 부합하는 제도정비를 위한 것임

※ 용어설명
 ① (FATF 상호평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AML(자금세탁방지)·CFT(테러 자금조달금지)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체제 구축 여부와 그간의 성과 등을 평가
 ② (국제기준) FATF는 효과적인 AML/CFT를 위해서 각 국이 이행해야 할 40가지 항목의 기준(국가적 정책과 조정, 금융회사의 의무, 수사·물수, 국제협력 등)을 발표

2 주요 법률개정 내용 및 시행령 개정 사항

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금융회사등의 내부통제 강화

- 특금법 개정내용
 - (개정전) 특금법은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업무지침 제정·운용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었으며,
 - ① 동 지침에 규정할 사항, ②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금융회사등이 감독해야 할 의무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았음
 - (개정후) ① 금융회사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일부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밖의 사항을 시행령으로 열거 하도록 하고, ② 금융회사등에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독립된 부서 등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의 적절성 등을 검토·평가
 - ** 동 의무 위반 시 개정법에 따라 과태료 (1억원 상한) 등의 제재가 가능
- 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사항
 - 금융회사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으로서,
 -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자금세탁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 수립 의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해외소재 지점 등의 관리방안 등을 명시

나. 과태료 상한의 상향(1천만원 → 3천만원 / 1억원)

- 특금법 개정내용
 -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감독 및 제재의 강화를 요구하는 FATF 권고기준, 주요국의 감독 강화 추세를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 사유를 추가*하고,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 / 1억원으로 상향
 - * 금융회사등의 내부통제, 기록보관의무 등

- 금융회사등의 내부통제의무 위반 등의 경우 과태료 상한을 1억원으로 규정한 반면,
- 반복되는 업무로서 건별 부과가 가능하고, 금융회사등의 자발적 협력이 필수적인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을 3,000만원으로 규정

□ 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사항

- 법률상 과태료 상한이 상향됨에 따라 위반행위 별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을 규정한 특금법 시행령 별표를 개정
-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30% ~ 100%로 규정할 예정

* 他 금융관련 법률 규정, 「금융 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7.5.17자 보도자료,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 추진')등을 참조

<시행령 상 주요 부과사유별 과태료 개별기준금액 예시>

주요 부과사유	종전 기준금액	시행령 개정안 (괄호안은 법률상 한도액)
의심거래보고 위반	1,0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 건별 부과를 통한 다액 부과가 가능한 점을 고려 한도액의 60%로 설정
내부통제의무 위반	신규 사유	1억원 (1억원) ※ 자금세탁방지의무 중 핵심적인 사항인 점 등을 고려 법률상 최고한도액으로 설정
지시·검사의 거부·방해·기피	1,000만원	1억원 (1억원) ※ 타 금융법 입법례 및 중한 제재 필요성 감안

다. 자료보관의무 부과 등

□ 특금법 개정내용

- 금융회사등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과 관련*한 기록을 '금융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를 부과

* 금융회사의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고객확인,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등

□ 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사항

- 시행령에 위임된 '금융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구체적 의미*를 명시
 - * 타법(신용정보보호법, 전자금융법 등) 유사 내용을 참고 (금융회사와 고객 간 금융거래 관계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해제권·취소권의 행사 및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

3 향후 추진일정

- 입법예고 (2.1일~3.22일, 약 50일간), 규제위·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19년 하반기 (7.1일)부터 시행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korea.kr

바르게알겠습니다

붙임 1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개요

1. 설립 목적

- UN 협약 및 UN 안보리결의 관련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 1989년 G7 합의로 설립
 - * (주요 UN협약) 비엔나 협약('88, 마약), 테러자금 조달 억제에 관한 UN 협약('99), 팔레르모 협약('00, 조직범죄), 메리다 협약('03, 부패) 등
- FATF 설립 이후 관할 범위가 중대범죄의 자금세탁(96), 테러자금 조달('01),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12) 등으로 확대
 - * 북한, 이란의 WMD (대량살상무기, Weapon of Mass Destruction) 자금조달에 대한 정밀금융제재 (Targeted Financial Sanction) 내용 포함

2. 주요 기능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분야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각국의 이행 현황을 회원국간 상호평가(Peer Review)를 통해 평가·감독
 - * AML(Anti-Money Laundering) & CFT(Counter Financing Terrorism)
- AML/CFT 국제규범 미이행 국가를 선별하고 제재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수단 개발 등

3.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FATF 역할 강화

- 파리 테러('15.11월)를 계기로 G20, G7, UN 등 국제사회는 테러자금 조달을 금지하는 FATF 국제기준의 효과적 이행을 강조
- 파나마 페이퍼스*('16.4월) 사건을 계기로 G20, G7, 반부패정상회의에서 실소유주 관련 FATF 국제기준의 이행 요구
 - * Panama Papers :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폭로한 파나마 최대 로펌 모색 폰세카가 보유한 약 1,150만건의 비밀문서로서 고위관료, 유명인 등의 조세회피 및 재산은닉 정보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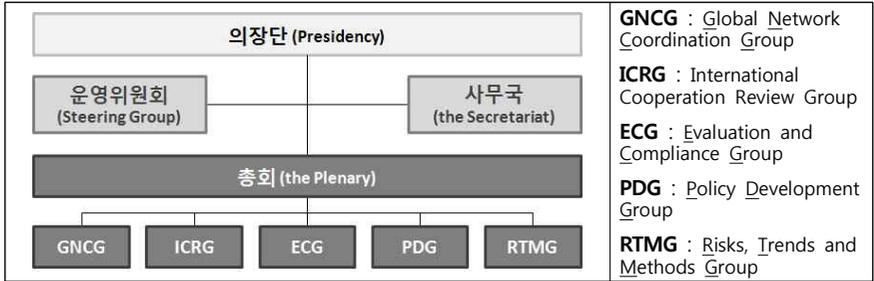
4. 일반 현황

- 회원 구성
 - 정회원(35개국 + EC, GCC), 준회원 (FATF 산하의 9개 지역기구), 옵서버 (IMF, WB, UN 등 28개 국제기구)로 구성

< FATF 정회원 현황 >

지역	OECD 국가	非OECD국가	국제기구
유럽 (20)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러시아	European Commission
미주, 기타 (7)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남아공, 아르헨티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아태 (10)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터키	중국, 인도,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계 (37)	26	9	2

조직 구조



FATF 의장

- 의장은 FATF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총회·운영위 등 주재
 - * 신제윤 의장은 '14.7~'15.6 부의장직 수임 후, '15.7~'16.6 의장직 수행

총회 : FATF 최고 의사결정기구

- FATF 국제기준 및 정책 방향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하며 비정치적·기술적 성격*을 중시함
 - * 다른 국가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국제기준 이행을 강제

붙임 2 FATF 상호평가 개요

- 상호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AML/CFT 제도를 FATF 평가방법서(Methodology)에 의거 종합 점검·평가하는 과정

자금세탁·테러자금 차단 통한 금융 투명성과 사회 안전 강화
 * '12년부터는 “대량살상무기(WMD)확산금융 차단 위한 정밀금융제재” 를 추가

예방조치	사법제도	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협력	투명성 장치
금융기관과 특정 전문직에 의무부과/이행감독 - 고객 확인 - 기록보관 - 의심거래보고 - 고액현금보고	자금세탁 범죄화, 범죄수익 몰수, 금융정보 수집·제공	테러자금조달 범죄화, 테러자금 즉시동결, 금융정보 수집·제공, 관련자 대상 정밀금융제재	국제협력 통해 자금세탁·테러·범죄 관련 정보 교환, 범죄자산 몰수, 범죄인 인도	법인·신탁 실소유자 정보 투명한 관리

- ‘기술적 이행(Technical Compliance)’에 ‘효과성(Effectiveness)’ 평가를 추가
- 후속점검 절차와 상호평가 수검 5년 후 현장실사(on site) 점검을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상호평가를 상설화

※ 상호평가 후속점검과 FATF 총회 보고주기

{	정규 후속점검: 3년 (5년내 1회) 강화된 후속점검: 1~1.5년(5년내 3회) ICRG 점검대상: FATF 총회(4개월)
---	---

- FATF 상호평가 수검국 84%가 “강화된 후속점검” 또는 “ICRG 점검절차” 대상이 됨

< FATF 상호평가 수검국 (19개국) >

구분	국가	후속점검 주기
정규 후속점검 (Regular Follow-up)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3국)	3년 (5년내 1회)
강화된 후속점검 (Enhanced Follow-up)	호주, 미국,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멕시코,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 사우디, 바레인 (15국)	1~1.5년(5년내 3회)
ICRG 점검절차 (ICRG Procedures)	아이슬란드 (1국)	4개월(매 FATF 총회시)